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정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제3선거구 정재웅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건축의 건축 기획 및 이에 대한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서울시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 및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 이에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있는 건축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동안 서울시 지침을 근거로 운영해오던 설계공모 기준 등을 법제화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공공건축 건축기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